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 유가증권 수탁약정서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부)앞

귀 행의 「유가증권 수탁약정서」상의 약정사항을 준수하고 유가증권 추심·수탁업무에 관련된 귀행의 제규정을 준수하여 거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예금주)		거래인감 (또는 서명)	
추심대전 입금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택 또는 전부 기재)	<input type="checkbox"/> 자택 : <input type="checkbox"/> 직장 :		
연락처 (선택 또는 전부 기재)	<input type="checkbox"/> 자택 : <input type="checkbox"/> 직장 :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	보관어음 월별 잔고현황 통지여부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E-MAIL <input type="checkbox"/> FAX

### 약정 사항

1. 귀행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본인(당사)의 어음, 수표 등을 수탁, 보관, 추심, 입금, 반환함에 있어 수반되는 유가증권의 변조, 변질 또는 기타 불이익 발생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본인(당사)이 지겠습니다.
2. 유가증권을 추심함에 있어 귀행에서 일상업무 처리방법에 의하여 추심의뢰시 결제과정에서 수반되는 등기, 우편의 지연이나 미도착, 우송 중 망실에 대하여는 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귀행은 책임을 부담치 아니합니다.
3. 귀행은 본인(당사)으로부터 수탁한 유가증권이 기재요건의 누락, 배서불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거절되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본인은 보관어음 수탁수수료 및 격지간 추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심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귀행에서 별도로 정한 소정의 추심수수료를 납부하겠습니다.
5. 보관어음을 반환 신청하는 경우 귀행은 '위탁유가증권 반환청구서'상의 인감(또는 서명)과 유가증권 수탁통장 인감(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보관어음을 반환한 경우에는 인감(또는 서명)의 위조, 변조, 도용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도 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이 약정을 귀행의 형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해지 통보를 받는 즉시 유가증권수탁통장을 귀행에 반환한 후 귀행에 보관되어있는 미추심 유가증권을 반환 받겠습니다.

